

서기 2024년 03월 13일

이 사 회 규 정

(주)LS네트웍스

이사회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7년	4월	3일	개정
2009년	7월	6일	개정
2010년	1월	26일	개정
2010년	7월	21일	개정
2014년	3월	21일	개정
2016년	3월	25일	개정
2017년	4월	5일	개정
2021년	7월	22일	개정
2022년	3월	28일	개정
2024년	3월	1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에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이사회에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단, 의장 부재시에는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출석 등) <삭제, 2016.03.25.>

제7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이사의 급여 및 처우) ① 사내이사의 급여 및 처우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외이사 급여는 年48,000천원을 한도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그 외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세부항목은 사외이사 위촉 계약서에 따른다.

제 3 장 회 의

제8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年 4회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그 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2시간전 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사의 진행)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공동대표의 결정
-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7)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
- (8)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9) 사채의 발행
-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 (1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12) 이사의 경업승인
- (13)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지정)
- (14)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 (15)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 (16) 준법지원인 선임 및 관련규정 제정, 변경 등의 승인 등
- (1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1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2)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4) 자본감소

- (5) 정관변경
-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보수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결정
- (8)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등
- (9) 법정준비금의 감액
-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2) 이사회에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1) 자산재평가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3) 중요한 대규모 투자
- (4)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등

4. 인사 관련 사항

- (1) 각 이사의 직무 부여
- (2) 집행임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

5. 기 타

- (1)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제14조(위임)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집행임원) ①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2(전문가의 조력) (각)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첨부된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정의” 등에 의한다.

부 칙(2007.04.0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0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05)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7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8)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내용은 제7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정의

- (1) 연간예산(투자, 비용, 구매)의 승인 및 그 수정과 예산의 초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승인[단, 소규모 투자(자기자본의 5% 범위내)를 위한 추경예산 승인은 필요시 이사회를 생략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투자
 - 가.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은 자기자본의 10% 이상
 - 나.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특정 금전신탁 포함)은 자산총액의 5% 이상
 - 다. 타법인의 주식,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은 자기자본의 5% 이상
- (3)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가. 장, 단기차입금의 결정(자기자본의 10% 이상)
 - 나. 채무인수, 채무면제결정(자기자본의 5% 이상)
 - 다. 담보제공,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자기자본의 5% 이상)
- (4) 경영상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계약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